

**제4회 세계농아인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 선발 기준**

□선발 기준

구 분	자 격	근 거
선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경기단체의 선수등록을 필한 자(2019년 기준)	내부기준
	최근 3년 이내 전국장애인(학생)체전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대회 입상자(기록 포함)	
지도자	감독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피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6조 1항 1호 (대한장애인체육회)

○ 지도자 선발

- 접수된 인원이 선발인원 이하일 경우, 감독 및 코치직은 다 경험자 순으로 선정
- 접수된 인원이 선발인원 초과할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해 참가 대상자 선발

○ 선수 선발

- 접수된 인원이 선발인원 초과 및 이하일 경우, 경기기록을 통해 참가대상자 선발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

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지도자에 한함)
 13.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 * 관련근거: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Korea Deaf Sports Federation